

과목시험 면제 및 제출서류 등 안내

| 면제조건 | 면제대상자 | 제출서류 |
|-----------------|---|--|
| 외국어시험 및 필기시험 면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2015년도 정기 필기시험(15. 9. 5 시행) 및 외국어시험 합격자 ※ 2015년도 정기 필기시험 합격자는 2016년도 특별시험과 정기시험 중 선택하여 하나의 시험에서만 합격자로 접수 가능 · 2016년도 특별 필기시험(16. 4. 9 시행) 및 외국어 시험 합격자 ※ 2016년도 특별 필기시험 합격자는 2016년도 정기시험에 한하여 합격자로 접수 가능 | <p>제출서류 없음 (단, 기존 아이디로 로그인 후 접속하여야만 면제내역 유지)</p> |
| 필기시험 면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(타 언어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) | <p>제출 서류 없음. (단, 외국어시험 면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어시험 면제서류를 구비서류에 맞게 제출)</p> |
| 필기시험 과목면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(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 포함) ·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(공고일 현재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에 한함)에서 실시하는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서류심사신청서(공단양식) ② 졸업(예정)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③ (부전공자만) 성적증명서 1부 <p>단, '관광법규' 및 '관광학개론'의 이수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하며, p7의 '마항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'</p> |
| 외국어시험 면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서류심사신청서(공단양식) ② 경력(재직)증명서 원본 1부(공단양식) (강의기간 명시) ③ 강의실적증명서 원본 1부 (강의과목 및 주당 수업시간 명시)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중·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서류심사신청서(공단양식) ② 경력(재직)증명서 원본 1부(공단양식) (해당 외국어 및 강의기간 명시)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유학한 경력이 있는 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서류심사신청서(공단양식) ② 출입국사실증명서, 여권사본(원본제시),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중 하나 ③ 졸업(재학)증명서 원본 1부 (재학기간 명시)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국내기업의 해외근무경력 ① 서류심사신청서(공단양식) ② 출입국사실증명서, 여권사본(원본제시),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중 하나 ③ 경력(재직)증명서 원본 1부(공단양식) (해외근무기간 명시) ④ 4대보험가입증명서(국민연금, 건강보험, |

| 면제조건 | 면제대상자 | 제출서류 |
|------|-------|--|
| | | <p>고용보험, 산재보험 등) 중 하나 나항참고</p> <p>■ 해외기업 근무경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서류심사신청서(공단양식) ② 출입국사실증명서, 여권사본(원본제시),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중 하나 ③ 경력(재직)증명서(공단양식)(근무기간 명시) 원본 1부,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상응하는 서류 1부 |

〈 외국 학력(경력)서류 제출 안내 〉

외국 (경력, 학력 등)발급서류는 대사관확인(단, 아포스티유(Apostille)협약 가입국은 대사관 확인을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) 후 한국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한국어로 번역·공증하여야 하고,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·재외국민등록부등본·여권사본(원본제시) 등에는 유학(근무)기간 전 출국 및 유학(근무)기간 후 입국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(단, 유학(근무)기간 중 국내에서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한 경우 그 기간은 불인정)

나.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발급기관

-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(전체이력): www.ei.go.kr ☎1350
-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(전체이력): www.nhic.or.kr ☎1577-1000
-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(전체이력): www.npc.or.kr ☎1350
-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(전체이력): www.4insure.or.kr ☎1350

다. 유학·근무 등 경력산정 기준일 : 원서접수 마감일

라. 서류제출기간

| 특별시험 | 정기시험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2. 22(월) 09:00 ~ 3. 2(수) 18:00 | 7. 25(월) 09:00 ~ 8. 2(화) 18:00 | 토·일요일 공휴일 제외 |

※ 필기시험(과목면제 포함) 및 외국어시험 면제자는 면제서류 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심사 후에만 면제자로 원서접수 가능

마. 제출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우편 두 가지 방법 중 택일

- ※ 우편제출 시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을 이용하여야 하며, 봉투에는 '관광통역안내사 면제증명서 재증'이라고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
- ※ 등기우편으로 제출 시에는 서류제출 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
- ※ 관련서류 양식은 큐넷 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

바. 유의사항

○ 제출한 모든 서류(어학성적표, 경력·학력서류 원본 등 일체)는 서류제출기간내에 서류를
지참하시어 방문제출해주실 경우엔 담당자의 검토 후에 원본대조필로 반환 가능합니다.

※ 단, 등기(우편)제출 시 서류 반환(원본대조필) 불가능.

○ 서류제출기간 내에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자는 기간 내에
성적증명서를 제출한 후, 필기시험 시행일에 졸업예정증명서를 시험장
시험본부로 제출(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, 미제출 시 필기시험 무효처리)

○ 서류제출 후 심사 승인을 확인하고 반드시 인터넷 원서접수(결제완료)
하여야 함

※ 큐넷 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 로그인 ➡ 마이페이지 ➡ '나의 면제내역'에서 확인

사. 제출기관 : 응시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기관에 제출

| 기관명 | 우편번호 | 주소 | 연락처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팀 | 02512 |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279 | 02-2137-0559(특별) . 0556(정기) |
| 한국산업인력공단 중부지역본부 자격시험팀 | 21634 |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| 032-820-8623 |
|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팀 | 46519 |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| 051-330-1965 |
|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팀 | 61008 |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| 062-970-1772 |
|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팀 | 42704 |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| 053-580-2351 |
|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팀 | 35000 | 대전시 중구 서문로 25번길1 | 042-580-9154 |
|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자격시험팀 | 63220 |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| 064-729-0714 |

※ 울산 소재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단 본부로서 서류접수를 받지 않음. 반드시 위 5개
기관 중 응시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, 울산으로 제출한 경우 이에
따른 불이익(면제서류 접수 불가 등)은 전적으로 수험자 귀책사유임